한화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1.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보상 안내 받으실 분

(별표(*)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보험금접수 불가합니다.)

* 성 명		* 주 소			
* 주민번호	□□□□□□ - □□□□□□□				
* 휴대전화	□□□ - □□□□ - □□□□				
하시는 일		직 장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지급안내	□ 알림톡(문자) □ 우편 □ E-mail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진료비 계산서(병원비 영수증)의 환자구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안내는 알림톡으로 기본 발송되며, 알림톡 수신 불가한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2. 청구사항

□ 이번 청구와 동일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음 (이전 사고접수번호 :)

(해당 사고유형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 발병(사고)일	□□□□ 년 □□ 월 □□ 일 *발병일 해당 질병으로 최초 병원 간날 *사고일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	사 고 장 소 (상해청구 시)	
* 사 고 유 형	□ 질병 (내부적 요인으로 몸이 아픈 경우) □ 일반상해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우) □ 교통상해 (자동차 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우) □ 배상책임 (제3자의 재물 및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물 (피보험자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그외 경우)		
청 구 담 보	□ 실손의료비(입,통원) □ 일당 □ 수술비 □ 진단비 □ 사망 □ 장해 □ 운전자		
* 사고(내원)경위		치 료 병 원	병원 과

교 통 사 고	자동차보험처리	□ 예 □ 아니오 처리보험사 : (담당자 연락처 :)		
	본인 차량 번호		이륜차 탑승여부	□ 예 □ 아니오
	탑 승 위 치	□ 운전석 □ 조수석 □ 뒷좌석 □ 보행중 □ 기타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 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상기 청구사항에 상세 사유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금 입금 요청계좌

□ 자동이체 계좌(기재 생략가능) ※ 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 예 금 주		* 주 민 번 호	□□□□□□ - □□□□□□□

※ 예금주가 보험금 수익자 본인인 계좌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4. 다른 보험회사 가입 여부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 단체보험 등)

□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1. ( ) 2. ( ) 3. ( )

※ 실손의료비,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비용 등의 실손보상담보는 비례보상 대상으로 타사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5. 고객 확인사항 및 장기보험 청구 안내

① 본인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기일 등)을 안내받고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조회 및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우리회사로부터 보험금 심사, 지급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업자 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을 말합니다.
③ 본인은 보험금 청구, 심사, 지급단계에서 관련 안내사항을 서면, 알림톡(문자)등으로 통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 성 일	년 월 일	*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	(서명)
법정대리인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반드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내용 확인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팩스 수신 여부 간편하게 모바일(QR코드)로 확인하세요

※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1)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 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 정보(보험금 지급 사유, 지급금액 등)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국가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 (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보험협회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국가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지급·심사**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2)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 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국내]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국외]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신용거래정보]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등)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생명 · 손해보험협회
조회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사고 · 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 · 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확인필-제2022-100637-전사(2022.09.02~2023.09.01)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 : (서명)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서명)

* 반드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작성예시]

1. 피보험자인적사항 및 보상안내받으실분

(별표(*)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보험금접수 불가합니다.)

* 성 명	김한화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501호		
* 주민번호	840101-1234567				
* 휴대전화	010-1234-1234				
하시는일	사무직	직 장 명	한화은행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지급안내	☑ 알림톡(문자) ☐ 우편 ☐ E-mail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진료비 계산서(병원비 영수증)의 환자구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안내는 알림톡으로 기본 발송되며, 알림톡 수신 불가한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2. 청구사항

☐ 이번 청구와 동일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음 (이전 사고접수번호 :)

(해당 사고유형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 발병(사고)일	2022년 07월 17일 *발병일 해당 질병으로 최초 병원 간날 *사고일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	사 고 장 소 (상해청구 시)	아파트 계단
* 사 고 유 형	☐ 질병 (내부적 요인으로 몸이 아픈 경우) ☑ 일반상해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우) ☐ 교통상해 (자동차 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우) ☐ 배상책임 (제3자의 재물 및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물 (피보험자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그외 경우)		
청 구 담 보	☑ 실손의료비(입,통원) ☐ 일당 ☐ 수술비 ☐ 진단비 ☐ 사망 ☐ 장해 ☐ 운전자		
* 사고(내원)경위	상해 : 넘어져 발목을 다침 질병 : 독감/고혈압/당뇨 등	치 료 병 원	여의도성모 병원 정형외 과
교 통 사 고	자동차보험처리	☐ 예 ☐ 아니오 처리보험사 : (담당자 연락처 :)	
	본인 차량 번호		이륜차 탑승여부 ☐ 예 ☐ 아니오
	탑 승 위 치	☐ 운전석 ☐ 조수석 ☐ 뒷좌석 ☐ 보행중 ☐ 기타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 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상기 청구사항에 상세 사유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금 입금 요청계좌

☐ 자동이체 계좌(기재 생략가능) ※ 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은 행 명	농협	* 계 좌 번 호	2025478911
* 예 금 주	김한화	* 주 민 번 호	840101-1234567

※ 예금주가 보험금 수익자 본인인 계좌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4. 다른 보험회사 가입 여부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 단체보험 등)

☐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1. ( ) 2. ( ) 3. ( )

※ 실손의료비,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비용 등의 실손보상담보는 비례보상 대상으로 타사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5. 고객확인사항 및 장기보험 청구안내

① 본인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기일 등)을 안내받고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조회 및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우리회사로부터 보험금 심사, 지급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업자 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을 말합니다.
③ 본인은 보험금 청구, 심사, 지급단계에서 관련 안내사항을 서면, 알림톡(문자)등으로 통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 성 일	2022 년 12 월 25 일	*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	김한화	(서명)
법정대리인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반드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내용 확인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팩스 수신 여부 간편하게 모바일(QR코드)로 확인하세요

※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및 담당자 문의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566-8000)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사 선임, 거절사유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보험감독규정 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 한 때
- 보험회사는 아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절 및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자격미달, 금융질서 해칠 소지, 주요 경영정보 미공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손해사정사)
  ②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경우(계약관계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분담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가전제품수리비용 등의 실손보상 담보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하며, 다른 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단, 다른 회사에서 조사진행 등의 사유로 접수 대행 거절 시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 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재문의 혹은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 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대로) 소비자보호파트
- 고객상담센터 1566-8000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지급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일, 재물·배상책임 손해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 지연 시에는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안내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 보험금보다 작으면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우편접수 : (04386)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5 태승빌딩 4층 장기보험금 접수 담당자

고객상담센터 1566-8000

한화손해보험

청구·지급절차 안내장

보험금 청구

연락주세요
고객상담센터 1566-8000

서류준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청구서류 안내장 참조)

3년 이내 청구가능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은 2년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별도 비용 발생할 수 있음

보험금 지급

3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지연 시 지연이자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조사협조 부탁드려요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필요

문제발생 시 도와드려요
고객상담센터 1566-8000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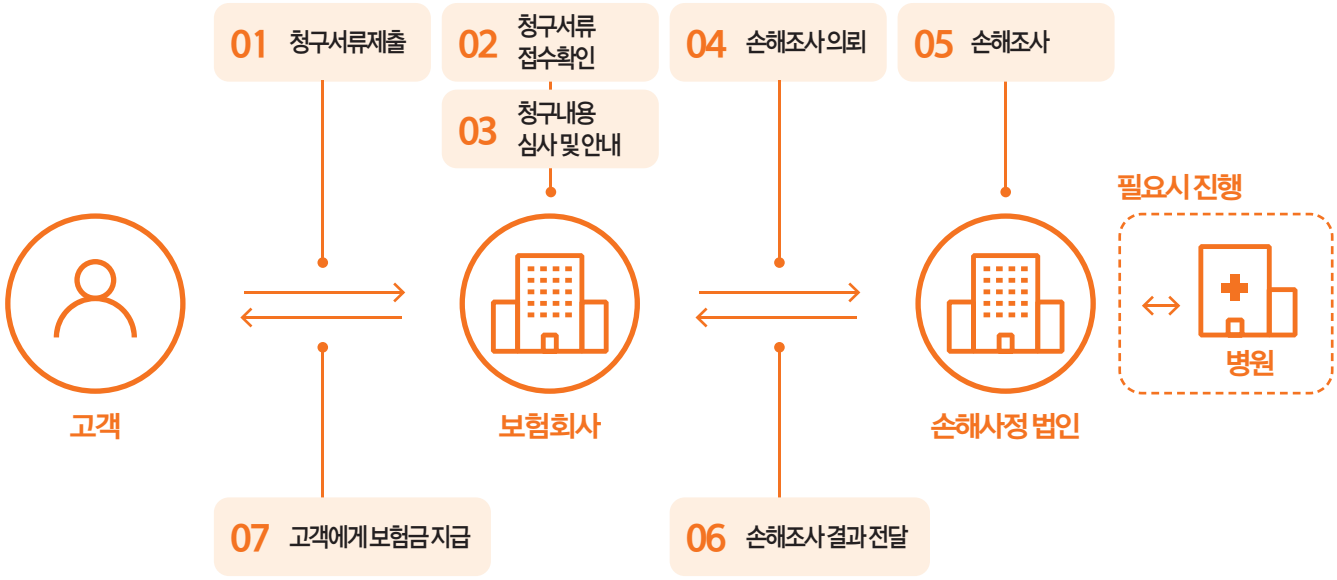

한화손해보험 모바일 앱

- 방문, 청구서작성 없이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진촬영만으로 보험금청구**
-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청즉시 지급 보험계약대출**
- 365일 계약조회는 물론 **보험료납입, 환급금신청**까지 가능
- **계약자변경, 수익자변경** 등 나의 계약사항도 직접 변경

설치방법
① QR코드 사진촬영 후 설치페이지 이동
② 구글 Play 스토어, 애플 APP Store에서 **한화손해보험** 검색

Q&A

Q1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Q2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지급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또는 의료 심사 등에 동의 거부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Q3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지급심사과정 및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4 현재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심사·조사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가지급보험금)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보험금보다 작으면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

Q5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상지급일은 최종 서류접수일로 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입니다.(단, 재물·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이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해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심사 결과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거절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거절 결정에 동의하시지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된 경우 보험금은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Q7 실손보험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는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최초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를 전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청구서류와 함께 보험회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각 보험회사 특약에 따라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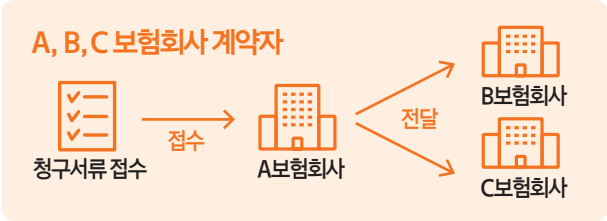

Q8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합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 통보하여 동의 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을 착수하지 않을 때

Q9 손해사정사 선임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선임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08. 참조),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10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다시 의료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 할 때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하며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Q11 손해사정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